

의안번호	2212666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5. 9. 24.
추 계 번호	25F484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규정의
적용범위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1조의33제1항 (기회발전특구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을 “창업·사업장 신설”에서 “창업·사업장 신설 및 증설”로 확대 － 적용대상: (현행) 창업, 사업장 신설 (개정안) 창업, 사업장 신설 및 증설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33제1항 (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사업장 증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
-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함
 - － 대전광역시(유성구), 부산광역시(동구·남구 등), 대구광역시(달성군·북구 등), 울산광역시(울주군 등), 세종특별자치시(연서면 등), 강원특별자치도(강릉·원주·영월·동해 등), 충청남도(보령·예산·서산 등), 충청북도(진천·제천·보은 등), 전북특별자치도(김제·전주 등), 전라남도(광양·여수 등), 경상북도(포항·구마·상주 등), 경상남도(고성·통영 등),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)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, ②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 증설을 하려는 기업의 수요 및 해당 기업의 법인·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추정해야 함
 - 동 과세특례는 2023년 말 법 개정¹⁾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 「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른 2024년 조세지출 실적이 없으며, 정부는 2025년 및 2026년 조세지출 실적도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

[표 1]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액: 2024~2026년
(단위: 억원)

	2024	2025(잠정)	2026(전망)
감면액	0	0	0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2025.9.

-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을 증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규모 및 해당 기업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소득 규모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[2023. 12. 31.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]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